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전기차 충전소
설치 동의안

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73
----------	-----

2023. 9. 7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8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9월 7일

-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신형근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남부출장소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, 사업시행자(한국전력공사)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3. 8. ~ 12.
- 설치장소: 남부출장소 민원인 주차장 내 2면
- 사업비: 한전 전액부담
- 사업량: 100kw(콤보1) 급속충전기 2대(기) 구축
- 수행기관: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(구축·설비 총괄 운영)
- 주요내용: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

□ 참고사항

- 2023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(한전→도): 4.28.
 -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(주변여건, 전력설비 등): 4~6월
- 2023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 제출(도→한전):5.9.
-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(한전→도): 7.15.
-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(설계, 시공, 준공): 8~12월
 - 설계(8월), 시공(9~11월)
 - 준공 및 서비스 시행(12월)
- 충전기 설치 예정지



○ 충전기 설치기준

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본건 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‘23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충청북도(남부출장소)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으로,
- 본건 동의안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허가), 제21조(사용허가기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(사용허가의 방법)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-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 내에 100kw(콤보1)급 급속충전기 2기를 주차면과 함께 구축하는 것임.
-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

고 충전소 부지(남부출장소 민원인 주차장 내 2면)만 충청북도(남부출장소)에서 제공하는 것이며, 그 외 사용료, 사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.

- 본건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의 정책에 부합하며, 전기차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도민들이 남부출장소에서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다만, 해당 전기차 충전소는 공용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후 사용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, 남부출장소 내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」

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37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8월 29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남부출장소 주차장 내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1조3 제2항에 따라,
 - 사업시행자(한국전력공사)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- ※ 한국전력공사 '23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최종 선정('23.7.)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3. 8. ~ 12. ※ 사업비 : 한전 전액부담
- 설치장소 : 남부출장소 민원인 주차장 내 2면
- 사업량 : 100kW(콤보 1) 급속충전기 2대(기) 구축
- 수행기관 :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 ※구축·설비 총괄 운영
- 주요내용 :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

3. 참고사항

- '23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(한전 → 도) : 4. 28.
 -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(주변여건, 전력설비 등) : 4~6월
- '23년 공용전기차 수요조사 제출(도 → 한전) : 5. 9.
-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(한전 → 도) : 7. 15.
-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(설계, 시공, 준공) : 8~12월
 - 설계(8월), 시공(9~11월), 준공 및 서비스 시행(12월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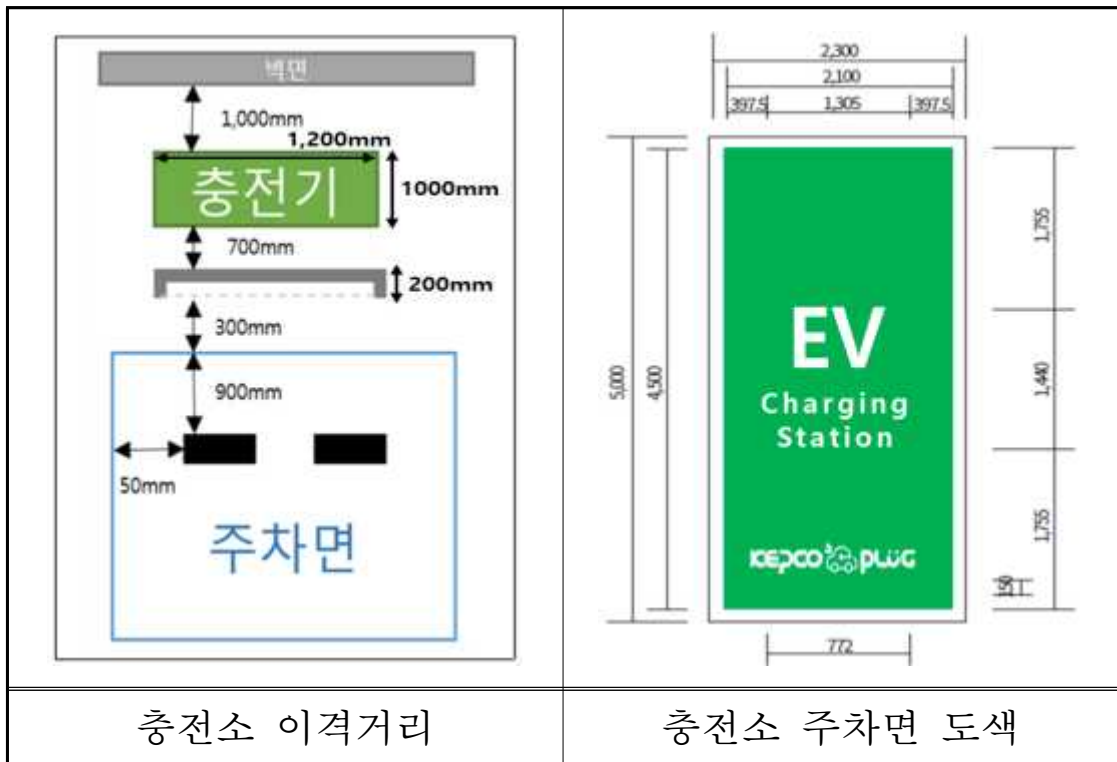
5. 기타

○ 충전기 설치예정지



충청북도남부출장소 주차장 내 설치(2개소)

○ 설치기준



□ **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**
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